

제268회 임시회(2017. 10. 11.~ 10.20.) 의안 처리 목록

위원회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안자) 공동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기획행정 위원회 (8건)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김금분 의원	원안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	정재웅 의원	수정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성 의원 임남규 의원	원안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회문화 위원회 (5건)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정동 의원	원안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정선 의원	원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농림수산 위원회 (5건)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장석삼 의원	원안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김용복 의원 진기엽 의원	수정

위원회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안자) 공동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도현 의원	원안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기홍 의원	수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관련 건의안	농림수산 위 원 장	원안
경제건설 위 원 회 (6건)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장석삼 의원	원안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교 육 위 원 회 (5건)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김연동 의원	원안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268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 내용소개

▣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김금분 의원(농림수산위원회·자유한국당·춘천1)



연령별·지역별 균형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과 인구정책의 비전,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금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범국가적 위기로 대두됨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도내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이 설정 되어야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

정재웅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5)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원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청년정책의 추진 및 이룰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재웅 의원은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강원도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강원도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제안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표발의: 김시성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속초2)
- 공동발의: 임남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태백1)



김시성 의원



임남규 의원

강원도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상위법의 근거 법률 약칭을 간결하게 정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부담금의 부가적 용도를 정비, 부담금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것 등이다. 김시성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정목적은 간결하게 정리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의 약칭을 정비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정동 의원(사회문화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



강원도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과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한국수어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강원도 농인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강원도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동 의원은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농문화의 육성과 한국수어의 교육·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정선 의원(사회문화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



강원도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헌신을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 사업,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지원 대상여부, 공훈 선양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정선 의원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국가 수호 및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높이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장석삼 의원(사회문화위원회·무소속·양양)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로부터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에서는 강원도지사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과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석삼 의원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고성)
- 공동발의: 진기엽 의원(농림수산위원장 자유한국당 횡성1)



김용복 의원



진기엽 의원

물 부족으로부터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에서는 강원도지사가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적정하게 시행하는 등 물 부족사태에 대비할 것과 이를 위해 수자원 개발의 위치와 면적, 취수계획량 및 용도,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 등을 포함하는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을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김용복 의원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도현 의원(농림수산위원회·바른정당·홍천2)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강원도의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축산·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조사료 재배 및 생산 계획,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수급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용,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조사료 종자 구입비용, 조사료 포장비용 등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현 의원은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확대 생산하여 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도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기홍 의원(농림수산위원회·자유한국당·원주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소규모 농업인을 품목별·사업장별 등으로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 강원도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할 것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기홍 의원은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달리 다양한 농산물의 체계적인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하다”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의 설립·관리 체계 확립에 따른 지역내 선순환경제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장석삼 의원(사회문화위원회·무소속·양양)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강원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석삼 의원은 “강원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김연동 의원(교육위원회·자유한국당·삼척1)



강원도 각급 학교의 석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이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과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강원도 학교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연동 의원은 “석면은 중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전에는 인식의 부족으로 학교 건축물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강원도 초·중등학교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